



성북구

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철도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44호(2009.02.05.)로 도시계획시설(철도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135호(2010.04.15.), 제2011-411호(2011.12.29.), 성북구고시 제2012-66호(2012.05.17.), 제2013-10호(2013.01.17.)로 도시계획시설(철도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「우이~신설 도시철도(경량전철) 민간투자사업」 구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 하고,

2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(지역·지구 등의 지정 등)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(지형도면 등의 작성·고시방법)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
붙임 : 성북고시 2015-148호. 끝.

주무관

한상오

도시계획담당

代**금영신**

도시계획과장

최태규

도시환경국장

10/05
최성태

협조자 주무관

김하연

시행 도시계획과-8872 () 접수 ()

우 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(삼선동5가) / <http://www.seongbuk.go.kr>
전화 02-2241-2764 / 전송 02-2241-6543 / hso1983@sb.go.kr / 대시민공개